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46
----------	------

2020년 6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우형찬의원(찬성의원 14명)
- 나. 발 의 일 : 2020년 5월 25일
- 다. 회 부 일 : 2020년 5월 29일
- 라. 상 정 일 :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6월 17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우형찬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 동 조례는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 및 사후적 평가 등에 관한 조치가 미흡한 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사후 평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시장은 공공갈등 발생 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제4항).
-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 다. 입법예고 (2020. 6. 3. ~ 6. 10.)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정책 시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사회적 영향 및 사후적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서울시는 2012년 9월 동 조례 제정이 ‘공공갈등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진단·관리하여 왔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최근 7년간 갈등진단 현황〉

연도	갈등진단 수	관리대상				등급제외
		계	1등급	2등급	3등급	
2020년	63	47	3	9	35	16
2019년	64	40	1	11	28	24
2018년	60	45	4	6	35	15
2017년	57	29	4	6	19	28
2016년	79	49	2	18	29	30
2015년	97	79	6	18	55	18
2014년	112	106	3	23	80	6

### 〈갈등 진단 등급 기준〉

- 1등급 : 시 전체 차원의 접근 및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결정한 사항 등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2/3(8개) 이상 해당
- 2등급 : 타부서 및 갈등조정담당관의 협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등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6~7개 해당
- 3등급 :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사업
  - 공공갈등진단표 12개 항목 중 5개 이하 해당

**가.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3조제4항)**

- 안 제3조제4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u>④ 시장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 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바, 공동체회복을 위한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를 바탕으로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조항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으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와
  - 한편, 동 조항이 포괄적 근거로 작동하여 광범위한 사업의 근거로 악용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갈등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동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공공갈등”과 “공동체 훼손”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책무 규정에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라는 단서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이로 인해 조례의 추상성이 오히려 증대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하겠음.

개 정 안	서울혁신기획관 수정의견
④ 시장은 <u>공동체 회복을 위하여</u>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u>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u> <u>공동체 회복을 위하여</u>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공공갈등 평가 및 평가 결과 공유 신설(안 제18조제3항,제4항 신설)**

- 안 제18조제3항과 제4항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 즉시</li> <li>2. 발생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 매 분기 말일</li> <li>3. 그 밖에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li> </ol> <p><u>&lt;신 설&gt;</u></p>	<p>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평가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 즉시</li> <li>2. 발생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 매 분기 말일</li> <li>3. 그 밖에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li> </ol> <p><u>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u></p>

<신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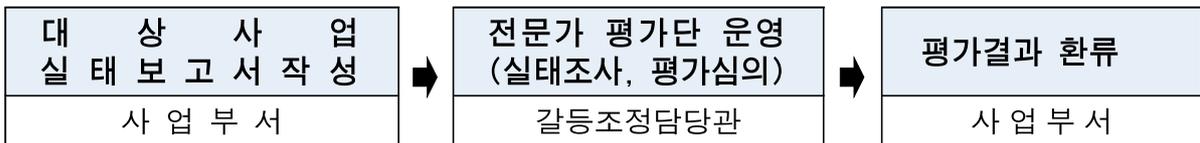
④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시의 갈등관리실태 점검 절차와 현황(참고자료 2 갈등관리 실태평가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갈등관리 실태평가 현황〉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8조
- 추진방향 : 갈등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결 노력 등 과정 중심의 평가
- 추진절차



□ 추진내용

- 실태평가 대상 : 중점갈등관리사업(갈등진단 결과 1·2등급 사업)
- 전문가 평가단 구성
  - 평가참여 :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 전문가, 공무원 등
- 실태평가 결과 환류
  - 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사업별 갈등관리 반영
  - 갈등관리 미흡(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표창, 교육자료 활용 등)

□ 추진실적

- '19년 실태평가(12건) : 용미리 자연장지 조성사업,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등
- '18년 실태평가(10건) : 퇴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등
- '17년 핵심사업 실태평가(4건) : 금천소방서 신설,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등
- '16년 실태평가(20건)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 등
- '15년 시범평가(10건) :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등

### 〈최근 3년간 공공갈등관리 실태 평가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가대상	핵심사업 실태평가	갈등진단 결과 1·2등급 사업	갈등진단 결과 1·2등급 사업
평가 사업수(건)	4건	10건	12건

- 서울시의 갈등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와 관련한 연혁을 살펴보면,
  - 동 조항(제18조)은 2012년 제정 당시에는 ‘임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각 부서의 갈등관리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5년에 실태평가 매뉴얼이 제작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도말 최초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하였음.
  - 2017년에는 동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소속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여 소속기관의 갈등 발생 현황 등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따라서, 현행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갈등조정 담당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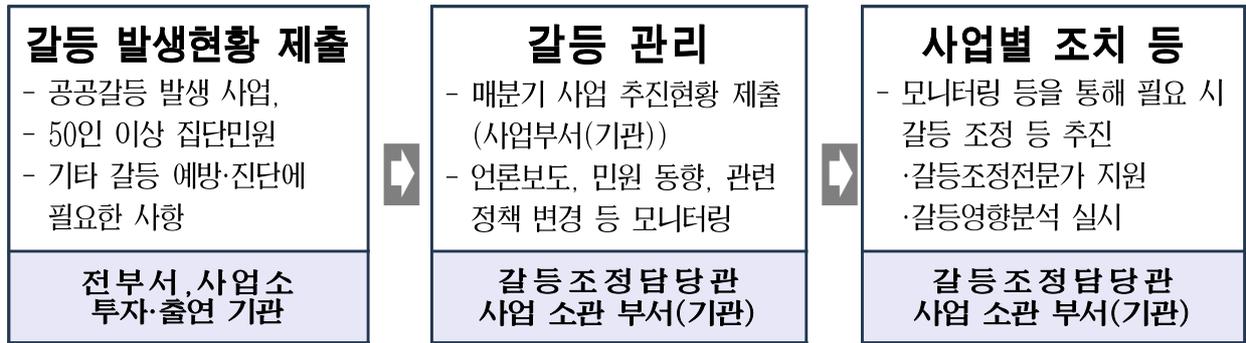
#### 〈갈등관리 상시보고제 (시행 : '17.10.10.)〉

50인 이상 집단 민원 및 갈등 현안에 대해 갈등관리 상시보고를 실시,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한 시정 신뢰도 향상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8조
- 대상기관(부서) : 본청 전부서, 사업소, 투자기관(5), 출연기관(15)

○ **갈등 관리 과정**



**갈등조정 요청 현황 (2018. 1.~2020. 6.)**

○ **요청건수 : 9건 (2018년 )**

연번	소관기관	민원(사업내용)	조치사항	비고
1	공공재생과	남대문시장 지하보도 개량사업에 따른 상인과의 갈등	조정(종결)	1월
2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공예센터와 입주 작가 간 갈등	조정(종결)	2월
3	은평구	녹번1~2구역 재개발 사업 관련 삼일교회 보상 갈등	조정(종결)	4월
4	남부수도사업소	봉천동 복권아파트 노후 상수도관 교체 관련 주민들 간 분쟁	요청보류(종결)	5월
5	강북구	미아동 트리베라 아파트 볼라드 설치 관련 갈등	조정(종결)	8월
6	금천구	시흥동 벤츠코리아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 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종결)	8월
7	마포구	마포로6구역 상가세입자 보상 민원 (강제집행 부당성, 추가보상금 요구)	조정(종결)	9월
8	SH공사	관악구 SH공사 전세임대사업 민원	조정(종결)	9월
9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방지 성동안심상가빌딩 운영 관련 민원	조정 (전문가 추천)	10월

○ **요청건수 : 8건 (2019년 )**

연번	소관기관	민원(사업내용)	조치사항	비고
1	거점성장추진단	성수수제화 활성화 사업 민간 위탁 관련 위탁체 간 갈등	조정(종결)	1월
2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갈등조정 요청	조정 (전문가추천예정)	6월
3	SH 공사	임대아파트 관리 방식 전환에 따른 갈등	조정(종결)	7월
4	교량안전과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 관련 갈등	조정(진행중)	7월
5	생활환경과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 등 관련 갈등	갈등영향분석	8월

	(강북구)		(진행중)	
6	장애인복지정책과	어울림 플라자 사업 추진 관련 갈등	조정(진행중)	9월
7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 관련 갈등	시민대토론회 (완료)	9월
8	교량안전과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 관련 갈등	조정(진행중)	12월

○ 요청건수 : 1건 (2020년 )

연번	소관기관	민원(사업내용)	조치사항	비고
1	어르신복지과	시립 송파실버케어센터 건립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관련 갈등 「어르신복지과 - 6496」	조정(진행중)	4월

○ 개정안은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모두에게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 갈등관리는 일정부분 전문적인 역량과 통합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갈등관리의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저해할 요소는 없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012년 제정안	2017년 개정안	2020년 개정안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	② 시장은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하여 소속기관(시가 투자·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p><u>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u>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 즉시</u></p> <p>2. <u>발생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 매분기 말일</u></p> <p>3. <u>기타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u></p>	<p>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주요 시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공공갈등 및 관계인 50인 이상의 집단민원 발생시 : 즉시</p> <p>2. 발생된 공공 갈등의 관리 현황 : 매분기 말일</p> <p>3. 기타 갈등예방 및 진단에 필요한 사항 : 수시</p>
		<p><u>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u></p> <p><u>④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 한편, 현행 조례의 체계상 제18조제2항에서는 갈등 발생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조문 정리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혁신기획관은 동 조례 제18조의 갈등관리실태 평가는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여 계획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한 규정으로,

-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 평가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제18조의 갈등관리 실태와 영역을 달리한다는 의견과 함께 통일적인 갈등 관리 등을 위하여 안 제18조 제3항과 제4항은 시장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제5항, 제6항으로 신설)하도록 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평가 결과를 공유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서울혁신기획관 수정의견
<u>&lt;신설&gt;</u>	<u>③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u>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u>안 제3조⑤ 시장은</u>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u>&lt;신설&gt;</u>	<u>④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유하여야 하며,</u>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안 제3조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u>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다만,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갈등 사안에 대한 갈등조정담당관의 옥상옥(屋上屋) 구조의 통합적 관리가 행정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바, 소속기관별로 갈등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내실있고 신속한 갈등관리를 위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갈등 관리에 대한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개정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546
----------	-------------

제안연월일 : 2020년 6월 17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 1. 수정이유

- 갈등 관리에 대한 시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시장에게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 시장에게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 시장에게 공공갈등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정책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항 중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를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로 한다.

안 제18제3항 중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시장”으로 하여 제3조제5항으로 한다.

안 제18제4항 중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을 “시장은 제5항”으로 하고, “공유하여야 하며”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로 하여 제3조제6항으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u>&lt;신설&gt;</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u>공동체 회복을 위하여</u>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u>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u>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u>&lt;신설&gt;</u>	제18조(갈등관리실태의 평가 등) ③ <u>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u> 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⑤ <u>시장</u> 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u>&lt;신설&gt;</u>	④ <u>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u> 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u>공유하여야 하며</u> ,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u>시장</u> 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u>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u> ,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항,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시장은 공공갈등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신뢰 향상 및 연대 의식 강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p> <p><u>⑤ 시장은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u></p> <p><u>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관련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